

## 경운대학교 헌장

### 전 문

경운대학교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인류문화를 창달하고 새 시대를 영도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탐구적인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도덕정신 함양”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되었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설립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창조, 진리, 인덕을 교육이념으로 삼아, 탐구적 지성인과 창조적 전문인, 도덕적 실천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이제 우리 대학은 세계화, 정보화로 요약되는 새 시대의 정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건학이념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대학 헌장을 제정하여 대학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

우리대학은 ‘창조’ ‘진리’ ‘인덕’의 세 가지 교육이념을 기반으로 대학을 운용하며, 대학의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 첫째, 창조성의 상징인 ‘새로움’의 이념에 충실하여,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매한 인격을 갖춘 창조적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도덕적이고 고매한 인격의 상징인 ‘인덕’의 이념에 입각하여,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도덕적 실천인 양성과 인격도야에 힘쓴다. 셋째, ‘진리’ 이념을 바탕으로, 대학 본연의 임무인 학문탐구에 진력하여 탐구적 지성인으로서 전문성을 제고시킨다. 이러한 이념의 실천은 창조적 지식기반국가건설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우리대학 구성원들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인식하여, 부단한 자기개발과 인격도야에 진력하여 대학의 이념과 교육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우리 문화에 자긍심을 지닌 세계 시민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활동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경운대학교 헌장은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가 추구해 나갈 목표를 설정·제시함과 아울러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경운대학교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은 우리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 및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① 대학의 건학 이념과 교육 목적
- ② 대학 편제와 교육 시설에 관한 계획
- ③ 대학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
- ④ 대학 재정에 관한 계획
- ⑤ 인사 및 행정에 관한 계획
- ⑥ 복지후생 및 학생 지도에 관한 계획
- ⑦ 대학의 장·단기 발전에 관한 계획

**제3조(기능)** 헌장은 우리 대학의 조직과 활동, 학칙 및 기타 모든 규정의 제정·개폐에 대한 이념적 근간이 된다.

## 제2장 건학 이념과 교육 목적

**제4조(건학 및 교육이념)** 우리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도덕정신 함양”을 건학이념으로, 창조, 진리, 인덕을 교육이념으로 삼는다. ‘창조’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고의 전환을, ‘진리’는 학문의 연구와 탐구자의 자세를, ‘인덕’은 도덕적으로 고매한 인격과 양식을 지향하는 교육이념이다.

**제5조(교육목적)** 우리대학의 교육목적은 탐구적 지성인과 창조적 전문가, 도덕적 실천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유능하고 긍정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

**제6조(교육목표)** 제5조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대학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발전적 미래상을 제시하고 상황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조적 전문인으로서의 능력을 기른다.
- ② 연구와 교육의 조화에 실용학문의 탐구능력을 갖춘 탐구적 지성인을 양성한다.
- ③ 뚜렷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민주의식과 봉사하는 자세를 갖춘 도덕적 실천인을 양성한다.

## 제3장 대학 편제와 교육시설

### 제1절 편제와 조직

**제7조(구성)** ① 대학, 학부(과) 대학원, 특수대학원을 기본 편제로 하고 필요에 따라 부속 및 부설기관, 부설연구소 등을 설립·운영한다.

② 편제는 사회적 수요와 학문간 연계성을 반영하고 우수 학생 및 교수를 선발관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8조(행정기구)**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의거 대학 여건에 맞는 행정기구를 둔다.

**제9조(교직원확보)** 창조적 전문인과 탐구적 지성인, 도덕적 실천인의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각 교과별, 분야별로 우수한 교직원을 적정하게 확보한다.

### 제2절 교육시설

**제10조(기본시설)** ① 강의실, 실험·실습실, 체육관, 체육단련장, 연구실, 행정실 등의 교육시설을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확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양적·질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② 새로운 기술과 자료들을 교수·학습과 교육연구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 교육 연구용 기자재 및 교수·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제11조(지원시설)** ① 도서관과 전산정보센터 등은 교육지원시설의 핵심으로서, 각종교육·연구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과 정보통신기술의 효율적 설치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료의 질과 양이 이용자들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자료와 시설, 장비를 확충해 나간다.

② 교육 관련 지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대학내 교육여건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제12조(연구시설)** 대학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소와 그 부대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활성화해 나간다.

**제13조(부속시설)** ① 학생기숙사의 시설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학생들이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신문사와 방송국, 교지편집국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학내 언론 문화와 학생들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③ 기타 필요한 부속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교육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육연구와 교수·학습 여건을 질적으로 제고한다.

④ “삭제”

**제14조(기타시설)** 학교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을 확

충하고 관리해 나간다.

**제15조(시설의 개방과 활용)** 각종 시설은 교육 및 연구활동 등을 고려하여, 대학 내·외부 관계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한다.

## 제4장 대학 학사관리 및 운영

**제16조(학생선발)** ① 탐구적 지성인과 창조적 전문인, 도덕적 실천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대학의 특성에 적합하고, 전문인으로서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전형방안을 도입하여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 선발방법은 공정성과 공개성,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며 시기, 유형, 단계 등을 가급적 다양화한다.

③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지속적인 연구·관리·개선 체계를 확보한다.

**제17조(학생정원관리)** ① 학생정원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전문인력 수급 계획에 따르되, 우리 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한다.

② 재입학, 편입학, 심화과정별 전과, 타 대학과의 교류제도를 두되,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8조(학기 및 수업)**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각 학년은 연간 2학기제를 기본으로 한다.

② 필요시 별도의 규정에 의거하여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를 채택할 수 있다.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학과와 야간수업, 사이버 강좌, 각종 통신 수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교육과정)** ① 우리대학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하고 창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미래세계에 대비하고 교수·학습의 수월성(秀越性)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② 산업체에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우리 대학의 설립 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의 운영을 특성화한다.

③ 교육과정은 전공, 교양, 비교과 활동으로 구성한다.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시,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하고 일선 교육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향한다.

④ 우리대학은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교육을 질적으로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해 나간다.

**제20조(대학 및 산업체간 학술교류)** 교육과 학술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들과 다음의 학술교류를 추진한다.

①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협정을 통한 교수·학생·직원의 각종 교류

② 학생들의 학점 교류 및 학점 인정제 운영

- ③ 공동 교육과정, 연구과정, 공동학위과정의 개설과 운영
- ④ 학술지, 논문, 연구자료 등의 학술자료 및 문화교류
- ⑤ 도서관, 실험실 등 연구시설의 상호 이용
- ⑥ 기타 상호협력 활동이 필요한 사항

## 제5장 재 정

**제21조(재정확보방안)**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학생의 등록금과 국가의 지원 및 사회의 기부금 등을 통해 확보한다.

**제22조(대학발전기금)** ① 지역인사, 산업체, 학부모, 동문으로 ‘발전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기금 조성의 프로그램 개발 및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발전기금을 적극 조성한다.

② 조성된 발전기금은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학생 장학금 지급, 교직원 및 학생의 후생복지 증진, 도서확충, 학술교류, 교육 및 연구시설 설비 등의 확충에 사용한다.

**제23조(재정의 운영 및 공개)** ① 구성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 집행, 운영한다.

②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년도 결산 및 당해 연도 예산은 대학 구성원 및 외부에 공개한다.

**제24조(추가 재원의 확보 및 운용관리)** ① 관련법규의 범위 안에서 학내의 수익성이 있는 추가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이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② 추가 재원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부서의 기능 활성화에 우선 활용토록 한다.

③ 여유자금은 대학구성원 모두에게 유리한 용도로 협의 하에 재투자할 수 있다.

## 제6장 인사 및 행정

### 제1절 인 사

**제25조(교직원의 채용)** ① 우리대학은 교육, 연구 및 봉사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교직원의 선발은 민주적이며 공개적인 전형절차에 따라 최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한다.

② 우리대학의 신규교수 임용은 공개적으로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채용기준을 설정하여 우수한 연구업적과 교원으로서의 인격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우리대학의 조교 신규임용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④ 우리대학의 직원인사는 일반직원과 계약직원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과 예규 및 지침을 준용하여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⑤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겸임교수, 명예교수, 외국인교수, 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있어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우리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임용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26조(교원업적평가)** ① 매년 교수의 교육,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교육, 산학 및 봉사, 연구 영역 항목을 평가한다.

② 평가의 세부사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③ 평가결과는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등 교수의 인사와 각종 연구비 및 성과급에 반영한다.

**제27조(교수의 질 제고)** ① 우리대학은 연구 및 학술진흥업무를 위하여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연구 및 학술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수립, 교수의 국내외 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우리대학은 교수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학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자체 학술연구비를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③ 우리대학은 국제간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교수의 해외파견, 외국인교수 초빙, 해외 대학 자매결연사업 등을 추진한다.

④ 우리대학은 교수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변화하는 교육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교수제를 실시한다. 연구교수는 우리대학 학술연구진흥에관한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28조(직원의 능력향상 및 평가)** ① 우리대학은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 우리대학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근무평정을 시행하며,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인사고과 및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한다.

③ 근무평정 결과는 직원의 승진과 승급, 성과급 지급 등의 기준이 된다.

## 제 2 절 행 정

**제29조(행정조직과 업무)** 행정조직 및 분장업무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의거하되 필요에 따라 직제 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부서간 업무체계)** ① 보조기관 및 부속시설의 장은 다른 부서의 동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당해 업무의 기획, 확정, 공포 또는 시행 전에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제31조(행정업무의 전산화)** 업무 처리의 신속성, 적시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종합행정전산체제를 구축한다.

**제32조(의사결정)** 대학의 의사결정은 합리성, 공개성 그리고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33조(위원회 구성)**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 합리성, 민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기관·부속시설에 의사결정 또는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4조(권한위임)** 행정 사무의 간소화, 행정의 능률제고,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관업무의 일부를 법령 혹은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기관이나 부속시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장 복지 후생 및 학생지도

### 제1절 교직원 및 학생의 복지 후생

**제35조(교직원복지)** 교직원들의 연구와 업무 환경 개선,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복지후생시설을 확충·운영해 나간다.

**제36조(학생복지)** 학생들의 쾌적한 면학환경, 건전한 여가선용,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학생 복지 시설을 확충·지원해 나간다.

**제37조(학생장학제도)** 우수 인재의 양성과 가계 곤란자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도입·운영한다.

### 제2절 학생 지도

**제38조(학생의 기본권 보장)** 우리 대학은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과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한다.

**제39조(학생자치기구 지원)** ①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에 입각한 민주적이고도 자율적인 학생자치기구를 적극 지원한다.

② 학생자치기구가 주관하는 학술, 문화, 체육, 봉사활동 등의 각종 자치활동을 위하여 교수 지도, 시설·설비, 예산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제40조(학생상담과 지도)**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도하고, 적성개발과 진로, 개인문제 등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직과 지원체계를 갖추어 학생상담과 지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① 지도교수제를 정립하여 적극 활용한다.

② 학생들의 적성,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자아의 이해와 성장을 적극 도모하고 상담활동에 활용한다.

③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④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진로지도나 현장교육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상담·지원한다.

## 제8장 장·단기 발전계획

- 제41조(장·단기발전계획 수립)** ① 우리대학은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유능한 전문인력 양성대학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래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관한 경운대학교 장·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② 장·단기 발전계획은 대학의 건학이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 ③ 장·단기 발전계획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 학생서비스, 행정, 시설 및 공간, 재정 등 대학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④ 장·단기 발전계획은 그 계획의 추진의지가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하되,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장 보 칙

- 제42조(대학헌장의 보완)** 대학헌장은 지속적인 개정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완할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 이 헌장은 2012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